

수석부회장 추천위원회 규정

제정 : 2013년 11월 22일
개정 : 2014년 05월 23일
개정 : 2019년 09월 27일

제 1 장 총 칙

- 제 1 조** 본 규정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수석부회장 추천과 관련된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(이하 '위원회'로 칭함)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** 수석부회장추천위원회는 정관 제 11조 3항에 의한 수석부회장 후보를 평의위원회에 추천한다.

제 2 장 위원회의 구성

- 제 3 조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 4 조** 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맡는다. 만약 직전 회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현 회장은 다른 전임 회장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다른 전임 회장 중에서도 위원장을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의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으로 위촉한다.
- 제 5 조**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6인 중 3인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평의원(5년 이상 역임) 중에서 평의원(전임회장, 펠로우회원 포함) 선거를 통해 최고득표 순으로 선정하고, 나머지 3인은 분야(기계, 범기계, 건설환경 등)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한다.

제 3 장 위원회의 운영

- 제 6 조** 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회에서 추천한 수석부회장 후보(들)에 대한 평의위원회의 의결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
- 제 7 조** 위원장은 수석부회장 선출이 있는 해의 6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석부회장 선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.
- 제 8 조** 위원회 의결은 5인 이상 출석과 4인 이상의 출석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수석부회장 후보의 자격 및 추천 절차

- 제 9 조** 수석부회장 후보는 종신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써 다음의 요건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위원회 위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.
- ① 2년 이상의 부회장 활동.
 - ② 총 3년 이상의 임원 및 위원장(위원회장, 부문회장 포함)으로 활동.

제 10 조 위원장은 모든 평의원(전임회장, 펠로우회원 포함, 위원회 위원 제외)에게 수석부회장 후보를 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도록 공지하며, 위원회에서는 평의원들로부터 추천된 후보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로 예비 수석부회장 후보군을 구성한다.

제 11 조 위원장은 모든 예비 수석부회장 후보들에게 학회 활동이 포함된 약력과 학회 발전에 대한 비전이 포함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,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분야(기계, 범기계, 건설환경 등)를 고려하여 수석부회장 후보를 최종심의 의결한다.

제 12 조 기타 수석부회장 후보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부 칙(개정 2019년 09월 27일) 이 규정의 개정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.